

|   |                |      |               |
|---|----------------|------|---------------|
|  | 규정             | 문서번호 | TWP-B218      |
|   |                | 제정일자 | 2015. 03. 16. |
|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 개정일자 | 2025. 11. 04. |
|   |                | 개정번호 | 1             |
|   |                | 페이지  | 1/4           |

##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 부칙

|      |       |      |               |
|------|-------|------|---------------|
| 작성부서 | 산학입학처 | 제정일자 | 2015. 03. 16. |
|------|-------|------|---------------|

| 구 분 | 작 성 | 검 토     |        |        |     | 승 인 |
|-----|-----|---------|--------|--------|-----|-----|
|     |     | 입학홍보센터장 | 교무학생처장 | 산학입학처장 | 부총장 |     |
| 직 책 | 담당  |         |        |        |     | 총 장 |
| 서 명 |     |         |        |        |     |     |
| 일 자 |     |         |        |        |     |     |



## 규정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      |               |     |     |
|------|---------------|-----|-----|
| 문서번호 | TWP-B218      |     |     |
| 제정일자 | 2015. 03. 16. |     |     |
| 개정일자 | 2025. 11. 04. |     |     |
| 제정번호 | 1             | 페이지 | 2/4 |

|   |                |      |               |
|---|----------------|------|---------------|
|  | 규정             | 문서번호 | TWP-B218      |
|   |                | 제정일자 | 2015. 03. 16. |
|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 개정일자 | 2025. 11. 04. |
|   |                | 개정번호 | 1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의 적용은 대학입학전형에서 우리 대학 고사(논술 및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 및 실험고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를 대상으로 하되, 실기고사(예체능)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제3조(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우리 대학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리 대학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대학입학전형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우리 대학 고사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      |               |
|---|----------------|------|---------------|
|  | 규정             | 문서번호 | TWP-B218      |
|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 제정일자 | 2015. 03. 16. |
|   |                | 개정일자 | 2025. 11. 04. |
|   |                | 개정번호 | 1             |
|   |                | 페이지  | 4/4           |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우리 대학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및 정시모집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공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 일까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전부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